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 (안 제2조)

- 1)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함
- 2) 이 외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돌봄통합지원의 직권 신청 (안 제4조)

- 1) 법 제10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자로서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을 직권신청의 대상으로 정함

다. 종합판정 및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등(안 제5조)

- 1) 법 제1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영위 능력, 의료서비스 필요성 등 판정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 2) 법 제12조제3항은 종합판정 등을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의 전담자 지정(안 제7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읍·면·동에 두는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에 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함

마.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 발굴 및 조사업무,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업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법 제22조에 따라 구축·운영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업무 범위를 규정함
- 2) 법 제22조제3항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할 다른 전산시스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 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등을 규정함

바.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권한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 지역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등에 관련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 및 전문기관은 법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강,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이외에도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등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하여 복합

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2개 이상 중앙 부처 또는 시·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3.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친족, 보호자 및 후견인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자로서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5조(종합판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판정은 대상자의 노쇠·장애의 정도 등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영위 능력, 질병 여부 등 의

료서비스 필요성, 영양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및 일상생활 돌봄 필요도 등을 판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항의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별로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분야의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전담자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읍·면·동 등에 두는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에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전담조직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간 전문인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통합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 발굴 및 조사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 연계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업무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업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등 업무
6.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된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하거나 제공기관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연계하는 업무
7. 그 밖에 통합지원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관리 및 통계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군수·구청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 정보의 처리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사회보장급여와 관련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그 수급이력 등에 관한 자료
 2. 법 제15조에 따른 재가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건강 등 정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 현황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
 5. 사회복지시설 이용 현황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전항의 경우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 ③ 법 제2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시스템

제10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및 전문기관이 처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전문기관이 소관하는 급여 신청 현황, 수급현황(등급이 있는 경우는 등급 수준을 포함한다), 수급 이력, 급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유
2.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조사 등의 결과
3.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조정권고 중 시·군·구 지역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소속 공무원,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등에 관련된 업무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2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22조에 따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2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의뢰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관한 업무
 6.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법 제23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업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 ②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정
기적 점검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연 락 처	(044) 202 - 3036